■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7.29>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증 번호
전문인력				

	명칭	규격	수량	처리능력(용량)
주요 설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이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3.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4.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